##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9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 : 이 영・김도읍・최승재

박상혁 • 양금희 • 허은아

金炳旭・김정재・유경준

한무경 · 황보승희 · 김영식

서일준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 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일 때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간 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3조,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8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질병 및 제91조의12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한다.

제43조제5항제1호 중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을 "제40조제5항, 제91조의9제3항 및 제91조의14제2항"으로 한다.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태아의 건강손상"이라 한다)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인 경우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①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족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제7호에 따른 장의비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91조의14(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요양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근로자의 자녀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 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1조의15(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에 게 그 자녀의 간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 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1조의16(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하여 치유된 후 그 자녀의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15세 이후에 자녀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한다.
-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자녀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 제91조의17(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자녀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18(준용) ①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 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51조 중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 본다.
  - ②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1항 중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요양기간"은 "간병기간"으로 보고,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 중 "제52조"는 "제91조의15"로 보며, 제56조제1항 중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을 받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제3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자녀"로본다.

- ③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해등급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한 경우"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의 자녀"로 본다.
- ④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과 제2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 "제57조"는 "제91조의16"으로 보고, 제83조제1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84조제3항제2호중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은 "제91조의14제2항"으로 보고, 제90조의2제1항 중 "제40조"는 "제91조의14"로, "재요양을 받은

사람"은 "자녀가 재요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112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3제 1항"으로 한다.

제113조 전단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및 제91조의13제2항"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4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업무</u>	<u>업무</u>
<u>상 질병</u> 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	상 질병 및 제91조의12에 따른
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u>업무상의 재해</u>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
정 및 지정취소 등) ① ~ ④	정 및 지정취소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	⑤
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	
위에서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	1. <u>제40조제5항, 제91조의9제3</u>
<u>3항</u> 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u>항 및 제91조의14제2항</u>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	
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 5. (생 략) ⑥·⑦ (생 략) <신 설>

<신 설>

2. ~ 5.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3장의3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

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태아의 건강손상"이라한다)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미숙아인 경우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인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u>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u> 우

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①

<신 설>

<신 설>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 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족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제7호에 따른 장 의비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 활급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7까 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91조의14(요양급여) ① 요양급 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 하여 그 자녀가 요양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 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의 자녀를 진료한 제 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 료기관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 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1조의15(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그 자녀의 간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6(장해급여) ① 장해급 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 하여 치유된 후 그 자녀의 신 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1 5세 이후에 자녀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 급한다.
-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 권자의 자녀가 장해상태가 호 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 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 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91조의17(간병급여) ① 간병급

<신 설>

<신 설>

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자녀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근 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준용) ①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요양 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과 제5항은 제외한다),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 • 제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 • 제3항, 제44조제1 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 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 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요양 중인 근로자" 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 로 보며, 제51조 중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

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 본다. ②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제53조제1항 중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 는 근로자"는 "자녀를 간병하 는 근로자"로, "요양기간"은 "간병기간"으로 보고, 제53조제 2항 및 제54조제1항 중 "제52 조"는 "제91조의15"로 보며, 제 56조제1항 중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을 받는 자녀 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제3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의 자녀"로 본다. ③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장해급여 및 간병급 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 항은 제외한다)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 해등급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

한 경우"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의 자 녀"로 본다.

④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과 제2 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 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 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 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 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 로, "제57조"는 "제91조의16"으 로 보고, 제83조제1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8 4조제3항제2호 중 "제40조제5 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은 "제91조의14제2항"으로 보고. 제90조의2제1항 중 "제40조"는 "제91조의14"로, "재요양을 받 은 사람"은 "자녀가 재요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
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	-
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	

- 1. <u>제36조제1항</u>에 따른 보험급 여를 받을 권리
- 2. ~ 5. (생략)
- ② (생략)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u>제36조제2항</u>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제112조(시효) ①
1. <u>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3</u>
<u>제1항</u>
<ul><li>2. ~ 5. (현행과 같음)</li><li>② (현행과 같음)</li></ul>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36조제2항
및 제91조의13제2항
· 
<u>.</u>